#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꾸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10009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07.2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2.11.07]

www.fishngrill.net

[ 피쉬&그릴<sup>too</sup> ]

# 정보공개서

[리치푸드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 [리치푸드 주식회사]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 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 68(역삼동, 리치푸드빌딩)

대표전화번호 : 02)326-3187 대표팩스번호 : 02)326-318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창업지원팀 1599-0078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 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피쉬&그릴 <sup>to</sup>	° 외 4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0길68(역삼동, 리치푸드빌딩)				
리치푸드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주식회사	2002.01.29.		2002.03.01.	여영주	02-326-3187 02-326-3		02-326-3189
	법인등록번호 11011		1-2435158	사업자등록변	]호	214-8	87-04377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리치푸드	피쉬&그릴 <sup>too</sup> 외	서울시 강남구 봉은	사로30길68(역삼동	·, 리치푸드빌딩)			
가맹본부	다시누드 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十年昇小	4개	여영주	02-326-3187	02-326-318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피쉬&그릴 <sup>too</sup> 외	서울시 강남구 봉은	사로30길68(역삼동	·, 리치푸드빌딩)			
대표이사	여영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4개	_	02-326-3187	02-326-318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봉은	사로30길68(역삼동	·, 리치푸드빌딩)
감사	류경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4개	_	02-326-3187	02-326-3189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피쉬&그릴<sup>too</sup>]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피쉬&그릴 <sup>too</sup>	
상 호	피쉬&그릴 <sup>too</sup> OO점	
상표(서비스표)	Fish & Grill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41-0315886 호
상표(서비스표)	교수&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41-0237636 호
그 밖의 영업표지	피쉬& 그릴 피쉬 앤 그릴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41-0132556 호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3,138,856	2,291,899	20,846,956	5,829,778	-751,339	-868,622
2022년	23,127,187	2,445,430	20,681,757	6,217,093	-345,431	-165,199
2023년	23,052,433	2,512,631	20,539,802	7,614,837	-297,562	-141,954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매출액은 해외사업으로 인해 발생 된 매출을 제외한 순수 국내 가맹사업을 통해 발생 된 물류매출만 기재 되어 있습니다.
- \*상기 매출액은 정확한 매출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당사의 피쉬앤그릴&치르치르는 2022.04에 자진취소하였습니다.
- \*당사의 내일도파스타는 2024.04에 자진취소하였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시ㄹ	현 직위		사업경력		
- 단면역구 -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여영주	대표이사	2000 ~ 2001	마르쉐 영업본부장	영업 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937	出 五 口 八	2002 ~ 현재	리치푸드(주) 대표이사	회사 경영 총괄	
	김낙겸	감사	2002 ~ 현재	리치푸드(주)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지이스(며)	
시심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1	1	28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

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그 제 보 리치푸드	가맹사업 경영	2006.7. ~ 현재	짚동가리쌩주(등록번호: 20080100366)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1.1. ~ 현기	2011.1. ~ 현재	치르치르(등록번호: 20110100042)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기메 H H		가맹사업 경영	2020.8. ~ 현재	로드락후라이드(등록번호: 20200862)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기맹본부 	주식회사	가맹사업 경영	2015.11~2022.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피쉬앤그릴&치르치르(등록 번호: 20151213)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_	가맹사업 경영	2016.7 ~ 현재	뉴욕야시장(등록번호: 20160803)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01~2024.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	내일도파스타(등록번호: 20200148)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sup>\*</sup>당사의 피쉬앤그릴&치르치르는 2022.04에 자진취소하였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피쉬&그릴 <sup>too</sup> (서비스표권)	당사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 사용권	2014.5.12. 출원 2015.3.12. 등록	출원 제41-2014-001 8412 등록 제41-0315886	여영주	2025.3.12.
피쉬&그릴 (서비스표권)	당사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 사용권	2005.6.21. 출원 2006.5.26. 등록	출원 제41-2005-001 4369 등록 제41-0132556	여영주	2026.5.26.
피쉬&그릴 (서비스표권)	당사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 사용권	2011.6.14. 출원 2012.8.13. 등록	출원 제41-2011-001 7076 등록	여영주	2022.8.13.

<sup>.\*</sup>당사의 내일도파스타는 2024.04에 자진취소하였습니다.

			제41-237636		
피쉬&그릴 (서비스표권)	당사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 사용권	2010.5.27. 출원 2012.1.17. 등록	출원 제41-2010-001 3529 등록 제41-02224988	여영주	2032.1.18.
피쉬&그릴 (상표권)	당사 메뉴상표 사용권	2012.1.17. 출원 2013.4.17. 등록	출원 제40-2012-000 3100 등록 제40-0964390	여영주	2023.4.17.
피쉬&그릴 (상표권)	당사 메뉴상표 사용권	2012.1.17. 출원 2013.4.17. 등록	출원 제40-2012-000 3106 등록 제40-0964389	여영주	2023.4.17.
차가운별아래 석류한모금 (상표권)	당사 메뉴상표 사용권	2008.1.17. 출원 2013.4.17. 등록	출원 제40-2012-000 3106 등록 제40-0964389	여영주	2023.4.17.
천정매다는등 (디자인권)	가맹점 인테리어로 사용	2006.4.10. 출원 2006.10.17. 등록	출원 제30-2006-001 3109 등록 제30-0431602	여영주	2021.11.17.
빌꽂이가결합 된테이블 (디자인권)	가맹점 인테리어로 사용	2006.5.8. 출원 2006.11.28. 등록	출원 제30-2006-001 6984 등록 제30-0434573	여영주	2021.12.14.
업소용테이블 (디자인권)	가맹점 인테리어로 사용	2009.10.30. 출원 2010.10.26. 등록	출원 제30-2009-004 7855 등록 제30-0578626	여영주	2025.11.5.
의자 (디자인권)	가맹점 설비로 사용	2009.10.30. 출원 2010.11.15. 등록	출원 제30-2009-004 7852 등록 제30-0579860	여영주	2025.11.17.
구분접시 (디자인권)	가맹점 기물로 사용	2009.10.30. 출원 2011.1.3. 등록	출원 제30-2009-004 7851 등록 제30-0587040	여영주	2026.1.25.
장식지	가맹점	2013.5.21. 출원	출원	여영주	2028.8.5.

(디자인권)	인테리어로 사용	2013.6.20. 등록	제30-2013-002 6209 등록 제30-0704430		
칵테일베이스 (특허권)	칵테일 제조법으로 사용	2007.3.6. 출원 2008.4.11. 등록	출원 10-2007-00217 43 등록 10-0825005	여영주	2027.3.6.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п.** 가맹본부의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사업 현황

1. [피쉬&그릴<sup>too</sup>] 을 시작한 날: 2003년 12월 1일

# 2. [피쉬&그릴<sup>too</sup>]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리치푸드(주)	피쉬&그릴 <sup>too</sup>	여영주	2003.12.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4-5
디지구크(구)	퍼피Q그틸	9787	$\sim$ 2016.04.27	씨에스빌딩 301호
コラエロ(ス)	회사인크리too	여영주	2016.04.28.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5(서교동)
ロイナニ(ナ) 	리치푸드(주) 피쉬&그릴 <sup>too</sup>		~2020.03	동현빌딩 7층
기키프ㄷ(즈) 키시ㅇㄱ리too		시서ス	2020 02 청 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리치푸드(주)	피쉬&그릴 <sup>too</sup>	여영주	2020.03 ~ 현재	30길68(역삼동, 리치푸드빌딩)

# 3. [피쉬&그릴<sup>too</sup>]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모히또칵테일	
피쉬&그릴 <sup>too</sup>	, , , , , , , , , , , , , , , , , , , ,	생생복분자칵테일	
	추점 -	뿔난닭발떡볶이	
		모든그릴꼬치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
시력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 5. 바로 전 3년간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	0	0	2	0	0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 6. [피쉬&그릴<sup>too</sup>]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피쉬&그릴<sup>tco</sup>]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7 13	지 군 /리 린	사중/이르 여어표기		심조	가맹점/직영점의 수				
一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짚동가리쌩주	20080100366	코리안펍	9/0	8/0	7/0		
				치르치르	20110100042	퓨전치킨팩토리	9/0	6/0	6/0
	리치푸드	로드락후라이드	20200862	외식	13/2	10/3	20/1		
가맹본부	주식회사	피쉬앤그릴&치 르치르	20151213	멀티푸드팩토리	_	_	-		
		뉴욕야시장	20160803	미들비어펍	79/0	85/0	105/0		
		내일도파스타	20200148	기타외식	0/0	0/0	0/0		

<sup>\*</sup>당사의 피쉬앤그릴&치르치르는 2022.04에 자진취소하였습니다.

<sup>.\*</sup>당사의 내일도파스타는 2024.04에 자진취소하였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 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가맹점사업	자의 연간 평	균 매출액(도	간위:천원:VA	(T별도)	
	00001 4 17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미	배출액(상한)	연간 평균 대	매출액(하한)	)] さ
지역	2023년말			상 <sup>·</sup>	한	하	한	산출
	가맹점수	연간 평균	면적		3.3m <sup>2</sup> 당		3.3m <sup>2</sup> 당	가맹점수
		매출액	3.3m <sup>2</sup> 당	최고매출액	최고	최저매출액	최저	
					매출액		매출액	
전체	0		해	당	없	음		
서울	0		해	당	없	음		
부산	0		해	당	없	ᅃ		
대구	0		해	당	없	ᅃ		
인천	0		해	당	없	010		
광주	0		해	당	없	OlD		
대전	0		해	당	없	010		
울산	0		해	당	없	음		
세종	0		해	당	없	ᅃ		
경기	0		해	당	없	010		
강원	0		해	당	없	ᅃ		
충북	0		해	다	젒	0 0		
충남	0		해	다	없	010		
전북	0		ōℍ	당	없	010		
전남	0		해	당	없	010		
경북	0		해	당	없	010		
경남	0		해	당	없	010		
제주	0		해	당	없	010		

<sup>\*</sup> 직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이 없으므로 상기 내용에 기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사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해당없음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피쉬&그릴<sup>tco</sup>]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지역사무소가 없습니다.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사용한 광고비 및 판촉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에는 뉴욕야시장, 짚동가리쌩주, 치르치르, 피쉬앤그릴too, 내일도파스타, 로드락후라이 등의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단위: 취	지출 비용 선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당사	가맹점	
합계		비공개	539,457	539,457	-	
광고·판촉	비공개	비공개	539,457	539,457	-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별도로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리치푸드(주)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1] 개월 소요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8,800 ]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후 7 일 이내	시작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 는 비용으로 각 채무 이행 시작 또는 오픈 후 반환 될 수 없 음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후 7 일 이내	교육 개시 이후 변환 인됨	교육 개시 이후 미이행 채무는 위약금에 해당 됨	

2)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8,800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95,052]	[약3,163]			기준면적 99.2㎡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49,500	약1,647	공사 시작 1일전	설치 전 계약취소	
주방기기		16,830	약560		설치 전 계약취소	
기물	별첨2	7,018	약234		상품 미공급시	
의탁자	<sub>물심2</sub> 공급업체 참조	10,335	약344		상품 미공급시	
간판	삼소	5,940	약198		상품 미공급시	
포스/벨 모니터/밴		2,429	약81		상품 미공급시	
초도 식자재발주금		3,000	약100		상품 미공급시	

<sup>[</sup>위 표의 면적 3.3㎡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기준면 적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정률로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 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은 실측 및 도면 제공과 공사검사의 대가로 3,3㎡ 당 300,000원(부가세별도), 설비/집기 200,000원(부가세별도)을 오픈 3일전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 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없음	없음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사	총 매출액의 5 % (다만, 가맹본부가 권유하는 식자재 사용 시 면제. 가맹점이 선택).	매월5일	후불제로 반환 없음	소멸성비용	권유 식자재 사용시 면제
광고분담금	당사	전국단위 광고의 경우 전국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개별청구	실시 후 반환없음	소멸성비용	

		부담함. (각 가맹점사업자간 비용부담의 배분은 각 가맹점의 수에 따라 배분함.)  단,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주류업체로 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금액의 5%를 광고비로 지원				
판촉분담금	당사	실비 청구	개별청구	실시 후 반환 없음	소멸성비용	
		기본 이론 교육 무료 실기 교육 실비 청구	개별청구		소멸성비용	수시교육
교육훈련비	당사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요청시	실시 후 반환 없음	소멸성비용	특별교육
		실비청구	개별청구 개별청구		소멸성비용 소멸성비용	신메뉴 교육
간판	당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개별청구	교체 이후 반환 없음	소멸성비용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POS사용료	협력업체	약정임대(무상) 단,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대규모 매장은 유상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참조
지연이자	당사	연 6%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휴업 중인 가맹점은 매출액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외되었습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 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귀하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 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최초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과정에서 신규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 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 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피쉬&그릴<sup>too</sup>]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 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가)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사용을 중지하여 합니다.
- 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상품(원부재료, 비품, 소모품, 시설 설비 등)을 당사에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피쉬&그릴<sup>too</sup>]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상기 품목의 세부 내용들은(원부재료의 품목 및 제조사 포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단위:원)		구분	
世世	중국(인귀)	상한	하한	丁七	
	해당없음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피쉬&그릴<sup>too</sup>]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sup>⊕</sup>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 게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산정기준	금액	비고
해당없음					

2) 당사가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 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 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모둠오뎅탕			
특선해물오뎅			
쭈꾸미와알주먹밥			
마늘삼겸구이			
꼬치콤보(대)			
꼬치콤보(소)		1 체 이 비나 그 다 거 그	
칠리새우튀김		1회 위반: 구두 경고	
칠리탕수육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2회 위반: 2회 이상	
별난포테이토콤보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치즈에샤워한양파감자튀김			
아싸!부대찌개			
얼큰부대찌개			
얼큰알탕			
아시아해물탕			

해물누물지당 나가사키합뽕당 소고기도들어간 버섯전물 후례취카프레제 참치다다개 연어고구마셸러드 케이준치킨셸러드 센라미워린프웰터드 권취리치킨 순살크리스피 치즈불탐 까공치기봉봉 하안눈꽃치킨 치킨목자폰즈 피워&그릴 샘플러 소고기숙후볶음 통오징어밴드 치즈를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할만족발 파파보쐅 고매"불담발 치스떡볶이 부타부타 두 데리아기마들짱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밀이 소세지금보 레드봉과임화재 간사이우동 공지구이 심차구이 시샤모구이 보지안주막법 마른오징어 목포 모등포(소) 모등포(대)	시원칼칼조개탕		
나가사기쌈뽕팅			
소고기도들이간 버섯전골 후례쉬카프레제 참지다다까 연어고구마센터드 케이준치킨센티드 살라미쉬림프센터드 컨쥬리치킨 순삼크리스피 지즈불담 잔똥치킨봉봉 하안눈꽃치킨 처킨유자폰즈 피쉬&그림 샘플러 소고기숙주복음 돌오징어밴드 치즈를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했한축방 파파보쌈 고내"불담발 치즈맥봉이 부타부타 투 테리아기마늘똥집 사과플뱅이&소만 왕치즈케란말이 소세지공보 레드불파일화채 간사이우동 공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루터방 마루오징어 육포 모등포(소)			
후레쉬카프레제 참치다다기 면어고구마센터드 케이준치킨센터드 산라미쉬럼프센터드 권휴리치킨 순살크리스피 치즈불탐 깐공치킨봉봉 하안눈꽃치킨 치킨유자폰즈 피쉬&그림 샘플러 소고기숙주복음 통오성어밴드 치즈를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출한족발 파파보완 고매'불담발 치즈택복이 부타부타 투 테리야끼마들똥십 사과골뱅이&소면 왕지즈개란만이 소세지금보 레드롭과일화체 간사이우동 공치구이 살치구이 시샤모구이 보치안주먹밤 마른오징어 옥포 모등포(소)			
참치다다끼 연어고구마센터드 케이준치킨센터드 살라미쉬린프센터드 컨추리치킨 순살크리스피 치즈븀닭 깐풍지킨봉봉 하얀눈꽃치킨 치킨유자폰즈 피쉬&그림 샘플러 소고기숙주복음 통오징어밴드 치즈담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출한족발 과과보쌈 고매"불닭발 치즈멬볶이 부타부타 투 베리아끼마들똥집 사과골맹이&소민 왕지즈게란당이 소세지곱보 레드불과일화체 간사이우동 짱치구이 삼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언어교구마샐러드 케이준치킨센터드 산라미쉬럼프셸러드 킨츄리지킨 순살크리스피 치즈불닭 깐중치킨봉봉 하얀눈꽃치킨 치킨유자폰즈 피쉬&그릴 샌플러 소고기숙주볶음 통오징어밴드 지즈를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쿨한족발 파파보쌈 고대'불닭발 시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테리야끼마들챙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지즈게란말이 소세지킴보 레드불과일화체 간사이우동 공치구이 삼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미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케이준치킨센터드 살라미쉬럼프셀러드			
살라미쉬림프센터드     전츄리치킨     순살크리스피     치즈불담     깐풍치킨봉봉     하얀눈꽃치킨     치킨유자폰즈     피쉬&그릴 샘플러     소고기숙주볶음     통오징어밴드     치즈를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출한족발     파파보쌈     고매"불닭발     치즈맥부이     부타부타 투     테리야끼마늘똥집     사과플뱅이&소면     왕지즈계란말이     소세지콥보 레드불과일화체     간사이우통     꽁치구이     시사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욕포 모듬포(소)			
순산크리스피 치즈불담 깐풍치킨봉봉 하안눈꽃치킨 치킨유자폰즈 피쉬&그릴 샘플러 소고기숙주볶음 통오징어밴드 지즈를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률한족발 파파보쌈 고매"불닭발 치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테리아끼마늘똥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지즈계란말이 소세지콥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공치구이 심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지즈불담 한풍치킨봉봉 하안눈꽃치킨 치킨유자폰즈 피쉬&그릴 샘플러 소고기숙주볶음 통오징어밴드 치즈를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클한족발 파파보쌈 고매~불닭발 지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테리야기마늘뚕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콥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공치구이 심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컨츄리치킨		
한동치킨봉봉 하얀눈꽃치킨 치킨유자폰즈 피쉬&그릴 샘플러 소고기숙주볶음 통오징어밴드 치즈를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쿨한족발 파파보쌈 고대'불닭발 치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데리야끼마늘똥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체 간사이우동 공치구이 심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멱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순살크리스피		
하안눈꽃치킨 치킨유자폰즈 피쉬&그릴 샘플러 소고기숙주볶음 통오징어밴드 치즈를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쿨한족발 파파보쌈 고메`불닭발 시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데리야기마능똥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꽁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치즈불닭		
치킨유자폰즈 피쉬&그릴 샘플러 소고기숙주볶음 통오징어밴드 치즈를 삼형제 비프찹스테이크 쿨한족발 파파보쌈 고메~불닭발 치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데리야기마늘똥집 사과골맹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꽁치구이 심차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깐풍치킨봉봉		
피쉬&그릴 샘플러	하얀눈꽃치킨		
소고기숙주볶음 통오징어밴드 치즈를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쿨한족발 파파보쌈 고매~불닭발 치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데리야끼마늘똥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광치구이 삼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치킨유자폰즈		
통오징어밴드         치즈를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쿨한족발         파파보쌈         고매~불닭발         치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테리야기마늘똥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광치구이         삼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피쉬&그릴 샘플러		
치즈톨 삼형제 비프참스테이크 쿨한족발 파파보쌈 고매'불닭발 치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테리야끼마늘똥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꽁치구이 삼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소고기숙주볶음		
비프참스테이크	통오징어밴드		
물한족발 파파보쌈 고매~불닭발 치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데리야끼마늘똥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꽁치구이 삼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파파보쌈 고매~불닭발 치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데리야기마늘똥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고매~불닭발 치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데리야끼마늘똥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꽁치구이 삼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지즈떡볶이 부타부타 투 데리야기마늘똥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꽁치구이 삼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부타부타 투 데리야끼마늘똥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꽁치구이 삼치구이 나차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데리야끼마늘똥집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꽁치구이 삼치구이 남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사과골뱅이&소면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꽁치구이 삼치구이 남치우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왕치즈계란말이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꽁치구이 삼치구이 나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소세지콤보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꽁치구이 삼치구이 나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레드불과일화채			
간사이우동			
공치구이       삼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삼치구이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시샤모구이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날치알주먹밥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마른오징어 육포 모듬포(소)			
육포 모듬포(소)			
모듬포(소)			
먹태			
레드자몽&오렌지칵테일			

모히토칵테일	
석류&사과칵테일	
생생 복분자칵테일	
생생 키위칵테일	
피치슬러시칵테일	
청포도슬러시칵테일	
감귤슬러시칵테일	
망고칵테일(500)	
베리칵테일(500)	
모둠그릴바베큐	
육회랑문어랑	
떠먹는치즈샐러드	
치즈볼샐러드	
치즈스틱	
진미채튀김	
오다리튀김	
꿀뗙빵떡	
퐁당리얼파인	
도리도리오징어킹	
오징어킹	
스파이시치킨립	
매콤어강정	
요거스트로베리	
요거블루베리	
요거망고	
블루아이	
레이디킬러	
망그레딸	
뿔난닭발떡볶이	
오불철판국시	
매콤간장고등어	
얼큰옹심이유부만두전골 포다리어가모	
퐁당리얼자몽 바삭누룽지반반탕수육	
리얼갑오징어물회	
꼬꼬깐풍	
뿔난치즈불고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 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잘 어줄 바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퓨전요리팩토리 : 퓨전요리와 칵테일주류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피쉬&그릴 <sup>too</sup>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반경 500미터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제 대 급 개 의 해 유 소 인 수 위 인 유	전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한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유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한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피쉬&그릴<sup>too</sup>'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

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피쉬&그릴<sup>too</sup> 여부

당사는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 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Ę	국내 온라인·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증	<u>z</u>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 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해당없음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1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1 ]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제8조 제2항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호
○ [피쉬&그릴 <sup>t∞</sup>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 해지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이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이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이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이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28조 제1항, 제2항
○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서 제32조 제2항 노후 점포 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가맹본 부"가 지정한 시정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	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Ī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ㅇ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투			
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	!		
수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1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 제39	조 제	3항,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세4	항 기	호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리	-  -  -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F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u>-</u>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	Ī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Ì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화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즈은 즈스하 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부이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 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 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 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	

			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_	_	_	_
업무위탁	_	_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피쉬&그릴<sup>too</sup>]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퓨전요리팩토리 : 일반인에게 퓨전요리와 칵테일주류를 제공하 면서 시설 및 판매품목이 유사 한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사업팀 (02-326-3187)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피쉬&그릴<sup>too</sup>]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8:00 ~ 03:00	365일 연중 무휴 영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직접 근무 권장	_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피쉬&그릴<sup>too</sup>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14	광고 성격	부담비율		보다 저희	n) –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브랜드광고	3 - w A 500/	광고비의 50%	광고 계획 공고	
	제품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수	→ 가맹점의	대중매체 광고
공동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광고참여 여부	명절, Day
				결정	이벤트 행사
				→ 가맹점부담액	(전국 행사)
				제시(명세서)	
행사 <sup>©</sup> 공동판촉 따라 달라 <sup>2</sup>		기획비용 부담	제작비용 부담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기획, 제작 비	용 이외는 협의	→ 가맹점의 행사	월별 판촉
				참여 결정 → 행사	행사
	일다심	, , , , , , , , , , , , , , , , , , , ,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파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 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 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귀하는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20조(비밀유지 의무), 제21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 일금 오천만원 (₩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귀하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위법행위 중단 시까지 1일당 일금 이십만원(₩200,000)씩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금으로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가맹계약기간 도중" 귀하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영업기간 동안 당사에게 지불한 월평균 상품대금(로열티 포함)의 5%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 5) 귀하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6) 당사는 상기 위약벌과 별도로 귀하의 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제공14(7)일 후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계약체결 즉시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 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ㅇ점포의 시설, 장비,	ㅇ간판교체 비용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가맹점사업자의	ㅇ점포환경개선일	
인테리어 등의	O인테리어 공사비용	이전을 수반하지	비용 청구(공사	로부터 3년 이내에	
노후화가 객관적	(장비·집기의 교체	않는 점포환경개선	계약서 등 공사	가맹본부의 책임	
으로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제외한	: 20%	비용을 증빙할	없는 사유로 계약이	
0위생이나 안전의	실내건축공사에	ㅇ점포의 확장 또는	수았셔帮	종료(계약의 해지	
결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알체의 비용	이전을 수반하는	→ 90일 이내에	영업양도 포함되는	
가맹 업의 통일성을	단, 가맹사업의	점포환경개선	기맹본부 부담액을	경우 가맹본부	
유지하기 어렵거나	통일성과 무관하게	: 40%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액 중 잔여	
정상적인 영업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기간에 비례하는	
현저한 지장을	추가 공시를 실시		(단, 가맹본부와	부담액은 지급하지	
주는 경우	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간	아니하거나 이미	
	비용은 제외)		별도의 합의가 있는	지급한 경우에는	
			경우 1년의 범위내	환수 가능	
			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		
			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	
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있는서류첨뷔	
→ 3차에 걸쳐	
기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가맹본부 부담	문의: 사업팀 (02-326-3187)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가맹점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부담	
가맹섬사업자 위 요청 시 회 회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가맹금에 포함된	문의: 사업팀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	통상의 경영지도	(02-326-3187)
		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비용을 초과한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부분에 한함)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고 있지 않으나 다양한 창업자금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문의요망).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피쉬&그릴<sup>too</sup>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피쉬&그릴<sup>too</sup>]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88시간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8시간	실비청구	월 1회
		개별 교육에 따라	
특별 교육	8시간	가맹점사업자와	선택사항
		협의하여 산정	
신 메뉴교육	8시간	본사지정 메뉴개발비	년 2회
재 교육	8시간	실비청구	선택사항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해당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일)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해당없음	

별첨 1. 재무현황

###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첨 2.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 품목은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업체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창업지원센터(02-326-318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 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richfood.net]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 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